



2023-4호

가정통신문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안내

꿈을 키우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군산바다유치원

<http://www.kunsanbada.kg.kr>

☎ 466-1860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유아들의 등·하굣길 차량 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차 및 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스쿨존내 주·정차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유치원 앞 불법 주·정차로 위협받고 있다고 경찰서에 민원이 접수되어 요즈음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장비 차량이 집중 단속하고 있으니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살펴보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유치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실 때에는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지정 승합차 장소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주·정차하시기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부모님께서 가능한 유아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스쿨존내 주·정차 금지 및 범칙금 부과 안내>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임(도로교통법 제12조)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정문 앞 도로"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치사상은 가중처벌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제15조의13)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3. 24.)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20.11.10.공포, 2021.5.11.시행)
 - 단속장비(카메라) 설치 확대 및 주민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잠깐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도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은 도로의 차선 표시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를 하거나 혹은 잠시 정차를 하는 것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이유

어린이들이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움직일 경우 다른 운전자가 아이들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도로에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도로에 3배의 금액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승용차 기준 12만원,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9만원 -

2023. 3. 10.



FORUM

군산바다유치원장

